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AA00569-0000000008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Ferrous Ammonium Sulfate Hexahydrat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권고 용도	자료없음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주식회사 영광글로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서울테크노파크1004호
긴급전화번호	02-6223-0862
라. 제조사 / 공급자 추가 정보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GHS에 따른 어떠한 유해한 물질 또는 혼합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GHS 라벨 요소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자료없음
대응	자료없음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다. 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Ammonium iron(II) sulfate-6-hydrate, extra pure
이명(관용명)	황산 암모늄 제(II)철 6-하이드 레이트
CAS 번호	7783-85-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과 접촉 시 즉시 물로 충분히 행구고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와의 접촉시,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 호흡곤란의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산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 먹었을 때
 - 의사의 관찰을 받으십시오
 - 즉시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 우연히 삼킨 경우,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응급처치자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 즉시 오염된 모든 의복을 벗을 것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 |
|----------|--|
| 적절한 소화제 | 물 분무, 포말, 이산화탄소(CO ₂), 건분말 |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시 다음과 같은 유해 분해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NO_x)
- 암모니아
- 유독성 금속 산화물 가스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자급식 호흡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할 것
-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감싸십시오
- 현지 상황과 주위 환경에 적절한 소화방법을 사용할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시오
- 개인용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접근을 금지하십시오
- 환기를 충분히 시키십시오
-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안전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게 하십시오
-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기계적 취급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누출물을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적절한 용기에 담아 폐기하십시오
-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공기 / 산소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저장 기간 <12개월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성분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노출한계	관리계수	갱신	법적근거
황산 암모늄 제(II)철 6 하이드레이트 Ammonium iron(II) sulfate-6 hydrate	7783-85-9	TWA : 시간 가중 평균	1 mg/m3	08 2016	KR OEL:노출기준설 정 대상 유해인자
그 밖의 참고사항	다음과 같이 표시됨: 철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 없음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적합한 호흡 용구를 착용하십시오

눈 보호

라텍스 장갑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십시오

마모되었으면 교체하십시오

손 보호

옆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신체 보호

보호복

위생상 주의사항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십시오

예방조치

눈 세척 및 안전 샤워 시설을 작업장 가까이에 마련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비의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결정체

색상

청록색

나. 냄새

무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C)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비연소성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해당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수용해도	269.0 g/l 에서 20 °C
파. 밀도	약 1.860 g/cm3' 에서 20 °C
	부피밀도: 약 840 kg/m3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C)	주의: 가열 시 결정수 손실, 지시된 대로 사용하면 열분해 되지 않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한 중합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공기 또는 산소에 노출로부터 보호 합니다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염기에 접촉하면 암모니아가 발생함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화재시 다음과 같은 유해 분해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유독성 금속 산화물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3,250 mg/kg, 쥐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자료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박테리아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해당국가 및 중앙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ADR	위험하지 않은 상품
나.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국제해상위험물 (IMDG)	위험하지 않은 상품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위험하지 않은 상품
다. RID	위험하지 않은 상품
15. 법적 규제현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KO_TOX: Korea.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제 20조; 개정에 따른 별표 1 유독물질, 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나. TRI (KO): Korea.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목록 (TRI)	
해당없음	
KO HAR SUB: Korea.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통령령 (제13053호), 제30조)	
다. KR HRM PRO: Korea.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통령령 (제13053호), 제29조)	
해당없음	
라. KR ARP: Korea.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대통령령 (제19203호), 표 2와 3)	
해당없음	
마. KR CHS: Korea.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 등재됨	

바. KR WEM: Korea.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해당없음

사. KR SME: Korea.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해당없음

KO BAN: Korea. 화평법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별표 4와 5 유
독물질, 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아. KO RES: Korea. 화평법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별표 2와 3 유
독물질, 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당없음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업장 폐기물

차.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미국관리정보(TSCA 규정)	TSCA 목록에 등재
호주 공업용화학물질(신고평가)법 ACT	목록 준수
캐나다환경보호법 CEPA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는 캐나다 DSL 목록에 나와 있음
캐나다 국내화학물질목록 DSL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는 캐나다 DSL 목록에 나와 있음
일본 카신호법목록	목록 준수
한국 유해화학물질 KECI	목록 미준수
필리핀 유독, 유해물질 및 핵 폐기물 관리법	목록 준수
중국 현행화학물질인벤토리	목록 준수
뉴질랜드 화학물질인벤토리	목록 준수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작성 Honeywell Performance Materials and Technologies Product Stewardship Group

나. 최초작성일 2021-01-27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최종 개정일자 2025-03-20

라. 기타

	HMIS III	NFPA
건강에 위험:	1*	1
인화성:	0	0
물리적 위험:	0	
불안정성:		0

*만성 건강 위험
-유해물질 등급 및 분류 체계(예: HMIS® III, NFPA): 해당 시스템 교육을 이수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본 정보는 신뢰할 수 있지만 보증이 아닌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에 대해 이루어진 자료입니다.